

2012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시행일 : 2012년 10월 20일)

분석과 해설 : 송 광 호

◆ 기출문제 분석표 ◆

구분	전체문제수 (20)	목차	세부분제수	비고 (전체 박스형개수문제 7문제)	특징
총론	10	경찰학서론	1		(1)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면서 일부를 변경함. → 특히 최근에 개정된 조문을 주의할 것. (2) 이미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다시 출제함. (3) 난이도는 2012년 제2차 일반 순경 공채시험과 비슷한 중상급. (4) 최근에 사건사고와 관련된 쟁점을 잘 활용할 것(예 구미 불산유출사고 → 특별재난지역) (5) 경찰행정법 문제수가 다른 시험보다 조금 많음. 특히 징계 관련 문제가 3문제로 집중적임. (6) 한국경찰사, 비교경찰론, 경찰수사론 문제는 출제되지 않음. (7) 조문(법령, 훈령 등) 문제는 14문제, 판례문제 1문제임.
		경찰철학론	1		
		한국경찰사	0		
		비교경찰론	0		
		경찰행정법	7	(1) 경찰조직법 6문제 (박스형개수문제 4문제) → 징계관련 문제 3문제 (2) 경찰작용법 1문제 (박스형개수문제 1문제)	
각론	10	경찰관리론-통제론	1	(3) 경찰구제법 0문제	
		생활안전론	1		
		경찰경비론	2		
		경찰교통론	2		
		경찰정보론	2	박스형개수문제 1문제	
		경찰보안론	2	박스형개수문제 1문제	
		경찰외사론	1		
		경찰수사론	0		

01 경찰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 ③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 ④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로 구분된다. 그리고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정리 경찰의 분류

구별기준	종 류	내 용	비고 및 예
직접적 목적 (3권분립사상)	행정경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권력작용	(1) 경찰(행정)법규가 적용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 작용	(1) 형사소송법이 적용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	일반경찰기관이 행하는 위해방제작용	교통경찰, 집회·결사에 관한 경찰, 위험물 단속에 관한 경찰, 풍속경찰, 소방경찰, 해양경찰
	협의의	경찰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일반행정기관이 행하는	위생경찰, 경제경찰, 건축경찰, 공물경찰, 관세경

	행정경찰	위해방지작용	찰
경찰권 발동의 시점	예방경찰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정신착란자 보호
	진압경찰	위해발생 후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사법경찰(범죄의 진압, 수사 및 범인의 체포)
보호되는 법익의 가치	고등경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
	보통경찰	일반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평시경찰	일반경찰법규에 따라 일반경찰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검찰, 경찰
	비상경찰	비상사태시 일반경찰기관 이외의 기관, 특히 군대가 치안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 전사·사변 : 계엄사령관 (2) 재해 : 위수사령관 (3) 수도 : 수도방위사령관
권한과 책임의 소재	국가경찰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자치체경찰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질서경찰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	진압경찰(사법경찰), 즉시강제
	봉사경찰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방법지도, 청소년지도, 교통정보의 제공

0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 ②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 ④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정리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의 의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들은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경찰의 서비스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들의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내 용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성(性)·나이·전과의 유무 등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됨 예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하자 가까운 자구대에 신고를 하였는데 자구대에서는 甲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출동을 거절한 경우
	예	(1) 편들기 : 친구나 동료경찰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예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한자가 동료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눈감아준 경우 (2) 해태와 무시 : 특정요구를 의도적으로 게을리 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 예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이 부자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고 달동네는 순찰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 자구대 소속 순경이 관내 순찰을 돌면서 A구역 슈퍼에서 음료수를 제공받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도는 경우
공공의 신뢰 확보	의 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회계약에 따라 경찰권을 대신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내 용	(1)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예 TV를 잃어버린 A가 옆집사람이 의심스러웠지만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

<http://cafe.daum.net/no1police>(경찰실무교실-송광호)

정리

훈령권

개 념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성 격	일반적으로 예방적 감독수단이나 교정적 감독수단으로 행사되는 경우도 있음		
직무 명령과의 비교	구 분	훈 령	직무명령
	상대방	경찰기관에 대한 명령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령
	효 력	기관의사를 구속	공무원 개인을 구속
	상대방 변경시 효력	기관구성자의 변동에 영향이 없음	기관구성자가 바뀌면 효력상실
	범 위	직무사항에 한함	공무원의 복무행동까지 포함
	양자의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아울러 가짐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음
법적근거	훈령권은 감독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음		
법적성질	원 칙	경찰조직 내부관계에서 하급경찰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해지는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 규칙 → 훈령은 하급경찰관청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음	
	예 외	조문형식의 훈령과 실질적 내용이 법규명령인 훈령은 법규성이 인정되어 대외적 효력을 가짐(다수설)	
종 류 (사무 관리 규정)	협의의 훈령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 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지 시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 규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일일명령	당직·출장·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형 식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문서의 형식으로도 가능		
절 차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공포를 요하지 않음		
요 건	형식적 요건	(1) 훈령권을 가지는 상급경찰관청에 의하여 발해질 것 (2) 하급경찰관청의 권한사항에 속하는 사항일 것 (3) 하급경찰관청의 권한에 관한 것일지라도 하급경찰관청의 권한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것 ↔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는 해당됨.	
	실질적 요건	(1)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3)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것	(2) 내용이 공익에 적합할 것 (4)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요건결여 효과	하자(흠) 있는 위법한 훈령으로 무효	
하급 기관의 심사권	형식적 요건	(1)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관해서는 심사할 권한이 있음 (2) 상급경찰관청의 훈령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음	
	실질적 요건심사	(1) 원칙 ①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심사할 권한이 없음 ②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훈령에도 복종하여야 함 (2) 예외 ① 훈령의 내용이 명백하게 범죄를 구성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권이 있음 ② 이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음 → 만약, 명백한 법규위반으로 절대 무효임에도 복종한 경우에 그 책임은 하급경찰관청 스스로 지야함	
훈령 위반의 효과	대외적 효력	훈령은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그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대내적 효력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하급관청의 행위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하급경찰관청이 훈령에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복종의무위반이 문제가 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훈령의 경합	(1) 주관 상급관청과 비주관 상급관청이 서로 모순되는 훈령을 발한 경우 : 주관 상급관청의 훈령에 복종		

<http://cafe.daum.net/no1police>(경찰실무교실-송광호)

06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 ④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2항 제7호].
②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1항
③ (틀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항].
④ (틀림) 감봉(↔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4항). 그러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같은 조 제5항).

조문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조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5.7.5>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예의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지방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당해 지방경찰청·경찰서·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연구소·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중 경위 이하예의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9.13, 1999.12.28, 2004.8.30, 2006.12.21, 2007.10.23, 2010.5.14, 2010.10.22, 2011.12.28>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200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 같다. <신설 2008.12.31>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12.31>
 - ⑦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 ⑧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07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구두로 소속과 성명만을 밝히면 된다.
- ㉣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해설

- ② “㉠, ㉢” 2개 틀리고, “㉡, ㉣” 2개 옳음.
- ㉠ (틀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해의 방지(x)}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 ㉢ (틀림) 경찰관이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4항].
- ㉣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

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 (틀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 그리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같은 조 제2항].
- ㉡ (틀림)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항
-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4항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③ 삭제 <1973.2.5>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③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 ⑧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 ⑨ 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09 「경찰공무원법」 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 ① 1개

③ 3개

② 2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② "㉡, ㉤" 2개 옳고, "㉠, ㉢, ㉣" 3개 틀림.

- ㉠ (틀림)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3조(경과 구분)}.
- ㉡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2항
- ㉢ (틀림)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제3항}.
- ㉣ (틀림)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 ㉤ (옳음)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임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 특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

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경찰공무원법을 따로 두어 국가공무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조문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경과 및 특기)

- ①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경과로 구분한다. 다만, 제2호의 수사경과 및 제3호의 보안경과는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제4호 나목의 운전경과는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87.12.31, 1994.12.31, 2002.7.10, 2004.12.18>
 - 1. 일반경과
 - 2. 수사경과
 - 3. 보안경과
 - 4. 특수경과
 - 가. 해양경과
 - 나. 운전경과
 - 다. 항공경과
 - 라. 정보통신경과
- ② 임용권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위이상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과 및 특기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 ⑤ 경과 및 특기별 직무의 종류, 전과, 특기의 부여 및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10 「보안업무규정」 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한다.
-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I 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
- ④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 비밀**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2호].
② (옳음) 「보안업무규정」 제10조(분류원칙) 제3항
③ (틀림) ㉠ I 급비밀취급 인가권자, ㉡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부터 ㉣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보안업무규정」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제2항]. 여기서 **경찰청장은 ㉡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에 해당하여 Ⅱ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같은 항 제2호].
④ (틀림)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다[「보안업무규정」 제31조(신원조사) 제2항 제1호].

조문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I 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 급비밀로 한다.
-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① I 급비밀 및 암호 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0.7, 1999.3.31, 2001.1.29, 2002.2.9, 2008.12.31>

- 1. 대통령
- 2. 국무총리
- 3. 감사원장
-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4. 각 부·처의 장
- 5. 국정원장
- 6. 삭제 <2008.12.31>
- 7. 국무총리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8. 대통령실장
- 9. 대통령 경호처장
- 10. 검찰총장
- 1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육군의 1,2,3군 사령관
- 1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0.7, 1999.3.31, 2006.3.29, 2008.12.31>

- 1. I 급비밀취급 인가권자
-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제10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31조(신원조사)

-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정리

문서 및 자재보안

개 념	국가기밀을 담고 있는 문서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보안대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문서 → 일반문서와 비밀문서 모두를 포함하며, I·II·III급 등의 비밀표지가 되어있을 필요도 없음	
비밀의 구분	비밀의 구분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	
	I 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과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수발할 때에는 영수증을 사용
	II 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비밀 → 수발할 때에는 영수증을 사용
	III 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대외비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 →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
비밀의 분류	분류권자	비밀의 구분은 비밀을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자가 그 비밀내용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 예 경비과에서 생산된 비밀문건은 경비과에서 비밀분류를 행함
	분류의 원칙	(1) 과도 또는 과소분류금지의 원칙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 하게 분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 암호자재 : II급 이상으로 분류, 음어자재 : III급 비밀로 분류, 약호자재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2) 독립분류의 원칙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예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에게 확립적으로 보고문서에 대한 비밀등급을 지시하였을 경우, 지시문서가 II급이라고 해서 응신문서까지 II급으로 분류하는 것 → 독립분류의 원칙 위반 (3)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준종의 원칙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
비밀 취급	개 념	비밀을 수집, 작성, 관리, 분류, 재분류 및 수발하는 일체의 비밀관리행위
	취급권자	(1)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 (2)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임 (3) 인원보안대상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기구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 결정시 즉시 인사조치 함
	경찰비밀 취급권자	(1) 경찰관은 임명과 동시에 III급비밀 취급권을 가짐 (2) 경비, 정보, 보안 등의 근무를 명 받으면 II급 비밀 취급권을 인가 받은 것으로 간주 함 (3) 특수경과 중 통신, 항공경과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II급 비밀 취급권을 가짐 (4) 특수경과 중 운전경과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III급 비밀 취급권을 가짐
비밀취급 인가	I 급비밀 취급인가 권자	(1)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각 원·부·처의 장 및 정무장관, 국가정보원장 (2)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경호처장 (3) 검찰총장 (4)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육군의 1·2·3군 사령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부대장
	II 급 및 III 급비밀	(1) I 급비밀 취급인가권자 (2) 중앙행정관서인 청의 장(경찰청장)

	취급 인가권자	(3)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5)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병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4)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기동대장
	인가권의 위임	(1)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과 기동대장에게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음 (2)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단위 경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음 (3) 위임받은 서장이나 단위기관장 등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음	
비밀의 보관		(1)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보관 할 수 없음 ↔ 다만, 보관 책임자가 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혼합보관 할 수 있음 (2)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 (3)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비밀의 관리		(1) I 급 비밀 관리기록부는 별도로 비치 (2) Ⅱ급이나 Ⅲ급비밀과 대외비는 구분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동일관리기록부를 사용할 수 있음 (3)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순서에 따라 관리번호 부여 (4)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을 파기시에도 분리하여 따로 보관 (5) 비밀열람기록전(철),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영수증철, 서약서철, 비밀수발대장, 비밀대출부 등 비밀관리부철의 보존기간은 5년 ↔ 그 이전에 폐기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리

신원조사

의 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확인하는 대인정보활동		
구별개념	(1) 범죄경력조회 : 법령에 관계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기타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통보해주는 제도 (2) 신원조회 : 대상자의 호적부를 관리하는 사·구·읍·면장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개별법령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개인의 수행사실 및 한정자산·금치산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회하여 통보해 주는 제도 ← 개인은 신청할 수 없음		
목 적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		
조사방법	모든 신원조사는 간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법적근거	(1) 국가정보원법 (2) 보안업무규정 (3)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4)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5)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6) 여권발급신청자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신원 조사권자	(1) 국가정보원장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함. (2)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군무원,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함.		
대 상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함)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조사결과 의 처리	(1)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1)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담당기능	원 칙	각종 신원조사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처리함을 원칙	
	예 외	(1) 외국인 및 교포·출입국자와 자비 또는 강제송환자, 외국기관 종사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외사과(보안과 또는 정보·보안과)에서 처리 (2) 긴급조회, 긴급신원조사는 보안과(통합경찰서에서는 정보·보안과)에서 주관	

11 다음은 여성청소년제에 근무하는 甲경감이 직원들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과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

처리규칙 상 용어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甲경감 :	규칙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합니다.
乙경위 :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뜻합니다.
丙경사 :	실종 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합니다.
丁경장 :	법(法)상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① 甲경감
 ② 乙경위
- ③ 丙경사
 ④ 丁경장

정답 ③

해설 ①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4호
 ②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3호
 ③ (틀림) "아동등"이란 ㉠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④ (옳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조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조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는실종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2.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3.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4.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한다.
 5.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6.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7.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14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④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1호).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2호
 ③ (옳음)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3호
 ④ (옳음)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6호

조문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癩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6.8]

15 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중 관련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

-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③ 물로 입 안을 행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④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② (옳음) 대판 2003. 1. 24, 2002도6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③ (옳음) 대판 2006.11.23, 2005도7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④ (틀림)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법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12.23, 2010도1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해설

- ① “㉠” 1개 옳고, “㉡, ㉢, ㉣” 3개 틀림.
- ㉠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 ㉡ (틀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예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1항 본문].
- ㉢ (틀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1항].
- ㉣ (틀림)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2항].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시(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19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 ④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8조(청구의 방법) 제4항 1문]. 즉 등본과 사본은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틀림)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3항].
③ (틀림)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3항].
④ (옳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9항

조문 「**보안관찰법**」
제8조(청구의 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처분청구서"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운영·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리 원본, 정본, 등본, 초본, 부분, 사본의 차이

원본	(1)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최초로 작성한 서류, 정본·등본·사본의 기본이 됨. (2) 일반적으로 서류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3) 원본(공문서)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4)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정본·등본·사본 등과 대립되는 말임.	판결원본(법원보관), 공정증서의 원본, 수표원본 등
정본	(1) 민사소송법과 같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있는 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임. (2)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예 판결문의 송달이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데는 판결의 정본으로서 하게 됨. (4)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함.	판결정본(원고와 피고에게 송달)
등본	(1)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 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의미함. (2)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됨. (3) 원본의 일부를 복사한 초본과 대응됨. (4)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인증등본과 그렇지 않은 보통의 등본이 있음 →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원본에 의거해서 작성되는 등본을 특히 정본이라함.	등기부등본·공정증서등본·어음 등본·소송기록의 등본 등, 판결등본(인증문 부기함)
부분	(1)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함. (2) 원본의 훼손에 대비하여 예비로 보관하거나 기타 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함.	신청서부분
초본	등본 중에서 특히 원본의 일부를 복사한 것	등기부초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위 서류를 복사한 것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②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④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한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범죄수법수배서(자주색수배서, Modus Operandi, Purple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국제체포수배서로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정리 국제수배서

국제수배의 의의	(1) 인터폴의 국제수배 : 국외도피범, 실종자, 우범자, 변사자 및 장물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수배대상인 인적·물적 사항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여 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2) 목적 :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간에 각종 국제범죄 예방과 진압에 있어 신속한 국제공조를 이루려함.		
종 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 Form 1	(1) 국제체포수배서 (2)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함. (3)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찰이 피수배자를 발견할 때 긴급인도 구속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정하는 구금의 청구·정식인도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됨. (4) 적색 수배서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은 범인인도전 절차의 핵심을 이룸.
	청색수배서	Blue Notice : Form 2	(1) 국제정보조회수배서 (2)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 목적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 Form 3	(1)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 (2)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발행함. (3) 전과의 정도·범죄종류·국제범죄조직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행함.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 Form 4	(1) 기출인 수배서 (2) 기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신원파악 목적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 Form 5	(1) 변사자(사망자) 수배서 (2)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 (3) 시체의 사진과 지문·치아상태문신 등 신체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1)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 수배서 (2)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행됨.
	범죄수법수배서 (지구색수배서)	Modus Operandi, Purple Notice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 및 수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보안경고 (오렌지수배서)	Security Alert, Orange Notice	폭발물·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INTERPOL-UN 수배서	INTERPOL-UN Notice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함.
발 행	(1)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고 인터폴을 이용하여 사무총국에서 발행. (2) 긴급한 경우 우선 인터폴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에게 수배의뢰한 후 소정의 양식으로 사무총국에 국제수배서 발행. (3) 사무총국은 각 회원국에서 수배 의뢰한 것을 종합하여 월1회 국제수배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배포 → 청색 및 황색수배서 등은 사무총국의 재량으로 발행.		
취 소	(1) 수배자검거·시효완성·범인인도·소재확인·신원파악·장물회수 등 수배취소사유 발생시에는 사무총국에 통보하며, 사무총국은 이를 종합하여 월2회 수배해제를 각 회원국에 통보. (2) 녹색수배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않으며, 이것은 수배요청국의 재량에 의해 취소할 수 있을 뿐임.		
국제 수배자 및 장물 발견시 조치사항	(1) 국제수배자 및 장물 발견시의 조치사항은 각 국제수배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상물을 발견한 때에는 사무총국 및 수배요청국에 통보하여 외교적 절차를 밟아 해결. (2) 적색수배서의 경우 이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즉시 체포와 신병인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수배국에 입국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수배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적색수배자 입국시 관할 경찰서 조치요령	(1)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수배자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함. (2)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 외사과에 보고하여 필요한 인원을 지원받음. (3) 수배자가 타관할로 이동한 경우 이동한 경찰서 외사요원에게 동향감시를 인계한 후 경찰청으로 즉보함. (4) 인수받은 경찰서는 수배자 출국시까지 동향감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경찰청 인터폴에 즉보함.		

